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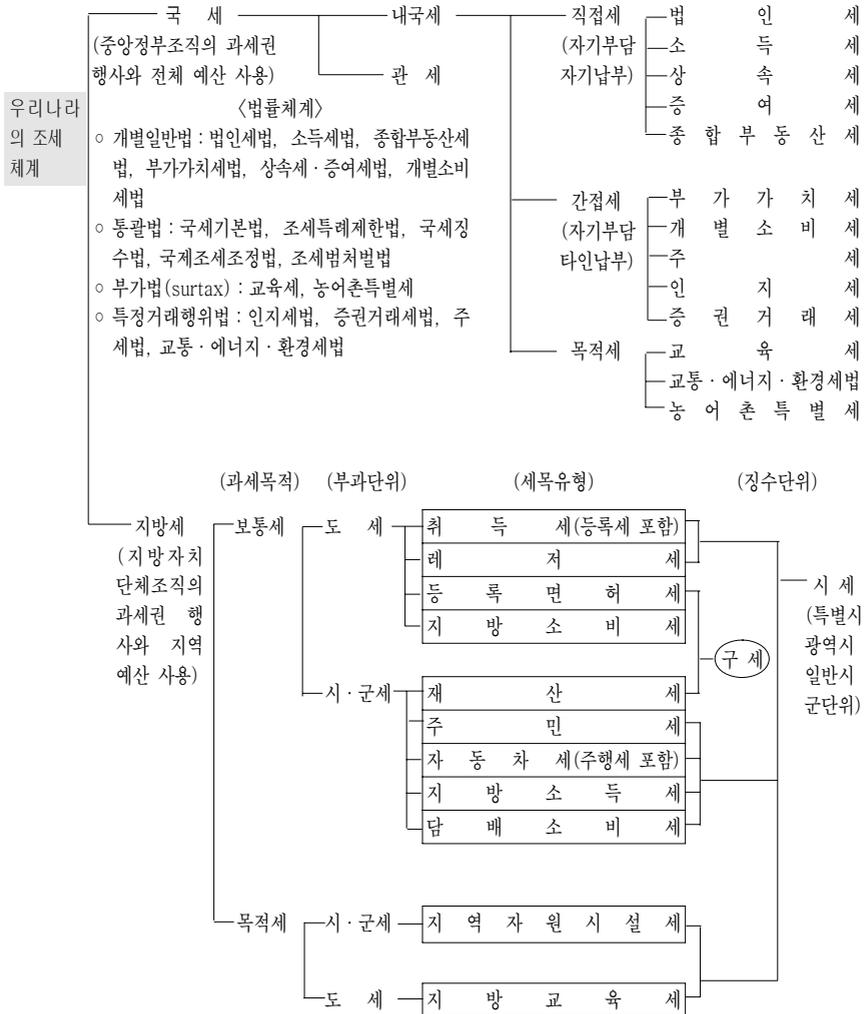


I. 조세법 개요와 각종 세무회계 핵심사항 개관



1. 조세법 개요와 세무공통상식 및 국세기본법 핵심

(1) 조세체계



(2) 납세자·납세의무자

(1차 납세의무자·2차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납세의무승계)

제1차납세의무자 : 소득발생 거래당사자, 수증자 등임.

제2차납세의무자로는 첫째, 법인해산시의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 받은 자 둘째, 법인에 대한 무한책임사원과 출자지분 50% 초과(50% + 1주)의 과점주주 집단의 최대주주나 경영지배실세 및 임원(이사·감사 등) 셋째, 과점주주 체납세액에 대해 그 과점주주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넷째, 사업을 전반적·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의 사업양수인·승계인 등을 들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 ① 법인해산 청산시 청산인과 잔여재산 분배받은 자,
- ② 재산증여시 증여자와 수증자
- ③ 공동상속시 각 상속인들
- ④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 등의 공동작성자
- ⑤ 각 공유물 등에 대한 공유자·공동사용자·공동사업자들이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집단들이다.
- ⑥ 특히 증여세의 경우 재산을 받은 자가 주납세의무자이지만 재산을 준 자에게도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므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방치해 버린다면 재산을 준 사람은 재산을 주는 것 이외에도 연대납세의무 때문에 증여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수증자의 정상생활 상태에서의 증여자의 세금임의연대납부는 역시 증여로 간주되어 총액과세(Tax on Tax)된다.
- ⑦ 법인이 분할·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되는 법인이 연대납부의무지며, 해산되는 경우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법인이 연대납부의무집.



(3) 납세지(주소지·소재지)·본점·주사무소 소재지·관할세무서·구청·세관

(4) 세금의 소멸시효와 부과제척기간(평생, 15년, 10년, 7년, 5년)

- 평생 : 허위·누락신고·제3자 명의활용·계약중도위장·국외재산 등은 평생과세(50억원 초과 금액만)
- 15년 : 상속세·증여세의 부정포탈, 신고서 미제출
- 10년 : 상속세·증여세 중 적법히 신고·납부한 범위내의 금액, 일반세금 중 사기·부정포탈·환급(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상여·배당처분 금액 포함) 및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행위로 가산세 부과되는 경우 등
- 7년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서 미제출(모든 세금)
- 5년 : 모든 세금에 대해 적절한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한 경우 및 자료상
- 7년, 5년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 연장 따라서 고의건 혹은 고의성 없는 착오나 오류에 의하여서건 15년, 10년, 7년 혹은 5년 동안 세금문제가 노출되지 않고 버티면서 세월이 흘렀다면 안내도 되고, 내라고 하는 세무서의 통지에 대해서 못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세·증여세의 사기·부정행위로 세금포탈인 경우는 평생기간동안 따라 다닌다.

(5) 사업개시(개인 : 사업자등록, 법인 : 법인설립등기+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 20일내)

2010. 12. 1부터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완료 후 직접 출력하여 사용 가능함.

(6)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및 기존 법인인수

(법인설립 및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사업시작부터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개인사업자의 규모가 커지면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많은데,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세감면이나 이월과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취득세·등록세 등이 면제되므로 법

인전환을 장려하고 있다.

법인은 법원의 상업등기과에 법인설립등기절차를 완료한 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다.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1인 이상의 발기인(주주) 모집, 최소 자본금 100원(최소 자본금 5천만원 규정 삭제되었고, 1주 금액도 종전 5천원에서 최소 100원 이상으로 분할조정)의 불입, 이사 3인(자본총액 5억 미만은 1인 혹은 2인도 가능), 감사 1인 선임을 최소요건으로 한다.

법인설립자는 주로 주변 친지나 친구 및 친척들에게 발기인, 주주, 이사 등에 취임하도록 부탁하는데, 사업수행초기의 경영권과 운영권 안정을 위해 인적조직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설립자본 중 본인명의로 과반수 초과(즉 50%+1주)의 주식을 취득하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지분비율이 본인과 친척을 포함하여 50% 초과되면 과점주주가 되어 과점주주집단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기존 법인인수와 과점주주문제) ⇨ 반면에 법인의 주식지분을 기존 주주들로부터 50% 초과 지분비율로 승계·인수 취득하면 그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새로운 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주차원의 취득세를 추가 납부한다. 즉, 지분비율이 50% 초과 되는지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지분비율 50% 초과인 경우는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한번 더 내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의 가능성이 크다.

설립당시부터 50% 초과 지분비율이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대신, 애초부터 과점주주이었으므로 그 이후의 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지방세법상 새로운 개념의 과점주주가 되지는 않으므로 주주의 취득세 부담이 없다. 반면에 기존주식의 신규취득으로 50% 이하(기존)에서 50% 초과(기존 혹은 신규주주)로 되면 취득세가 과세되며, 애초 설립당시부터 50% 초과인 경우는 향후 다른 주주의 지분인수 및 위장분산주식의 실명전환에 따라 주식소유비율이 설립시 지분비율보다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가 지분비율 해당액만을 과점주주 취득으로 보아 그 법인의 기존 부동산 보유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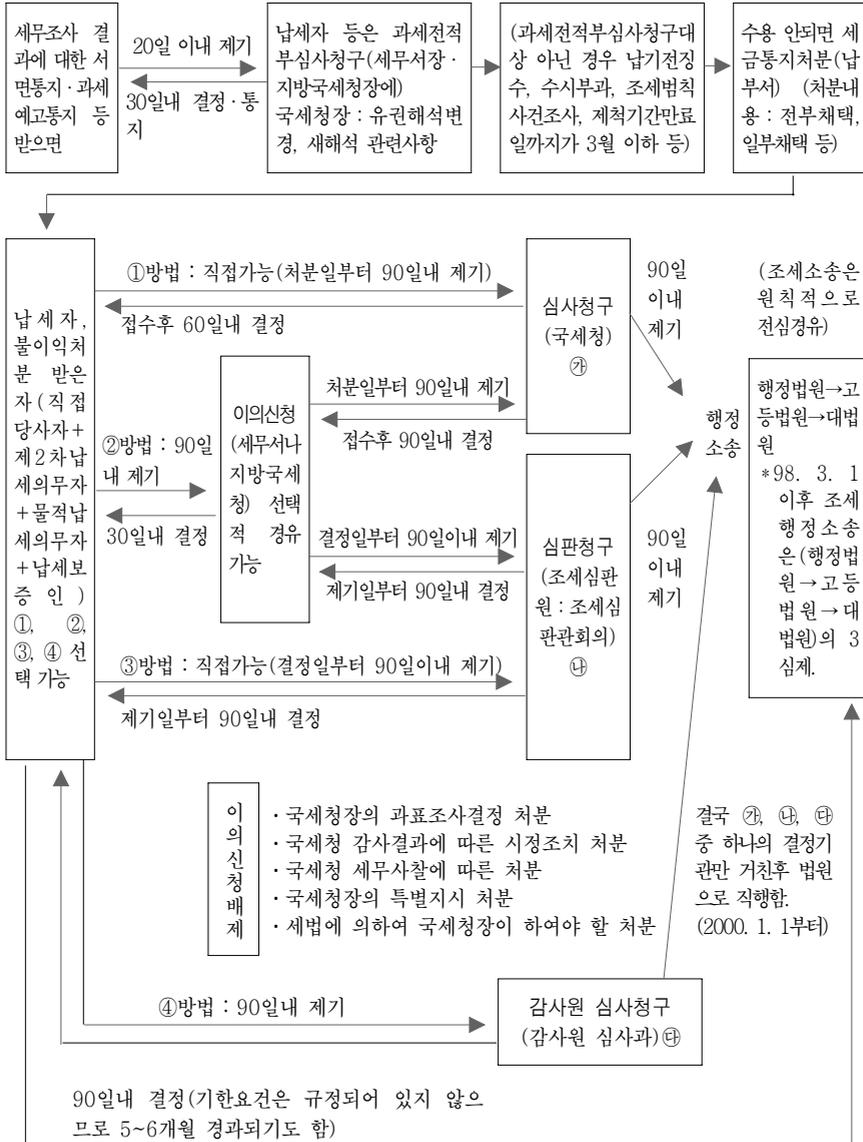
2. 각 중요세금의 신고납부제도와 압산과세 및 신고기한

(1) 세금신고납부제도(적법기한내 자진신고·우편신고·전자신고·정부부과·원천징수) : 99년부터 기한후 신고가능(적법)애짐⊕추가자진납부절차도 있음

(2) 종합합산과세·분리과세·합산신고 계산기간·단위·별도분류과세 등의 개념

구 분	합 산 (범위와 방법)	개별구분 (범위·대상)	
경제주체별 합산	법인	본·지점합산	자회사·관계회사 별도신고납부 (연결법인은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 가능)
	개인	부부의 금융·자산소득합산과세는 위헌으로 2002년부터 소급해 폐지됨.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단위과세(부부 따로 과세)	개인근로소득의 개인별 별도과세 각 개인사업소득의 별도구분
	재산	상속재산전체를 하나로 하여 상속세 계산(부와 모의 개별 증여재산도 합산과세)	각 증여자·수증자별로 증여재산을 별도구분 독립과세함.
소득과 거래	소득	종합소득합산(정기적·지속적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1년 단위로 모두 합산)	퇴직·양도소득의 별도분류과세(장기간의 일시·우발적 축적소득의 분산)
	금융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일정액 2천만원 초과 이상), 98년~2001년까지 금융실명법 및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과세유보 분리과세로 종결되었음. 2002년부터 부활	분리과세 이자·배당·기타소득(소액금융저축이나 특별채권 이자수익의 금융기관 원천징수: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종결
	부가세	주사업장 총괄납부(합산납부), 본사(사업자)단위 통합신고	각 사업장 단위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와 부가세신고·납부가 원칙임.
기간·과세요소 발생기간	법인	1사업연도 단위합산	외국법인에 대한 개별원천징수
	개인	1년단위 합산(1. 1~12. 31) 1년단위 양도소득합산	이자·배당 중 연 2천만원 이하, 소액기타소득,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각 개인소득의 개별징수, 2001년부터는 종합과세
	상속	상속재산합산(사망전 10년내 상속인증여재산과 5년내 기타관계인 증여재산의 합산)	10년 이전 자녀생전증여, 5년전 기타관계생전증여, 1년전 처분·부채 등은 분리
	증여	10년내 동일인 증여재산합산(증여자 다수, 수증자 1인의 통합신고)	증여시마다 부과함이 원칙

(3) 과세적부심사와 조세불복 전심절차 및 세무행정소송관계



※ 명백한 위법·오류 등은 부당이득반환 청구가능,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체·도지사·조세심판원을 경유함.



(4) 각종 세금의 신고납부기간과 기한 및 가산세 등 요약비교

세법·세목	유형·소구분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신고납부 기한	납세의무 확정일	기환후의 가산세율	비고 및 특기사항
소득세	종합소득세	1.1~12.31	매년 12.31	차년 5.31	자진신고납부일 (5.31)	무신고 20%(과소신고 10%, 부당과소·미신고 40%) + 연체이율 (하루 0.03%)	어떤 개인이라도 과세기간 모두 동일함.
	양도소득 예정신고 (토지매각 예정신고)	각 양도시점 예정신고도	양도일 말일 필수임.	다음 다음월 말일 (2개월) 주식은 양도한 분기말 + 2달	자진신고 납부 (5.31)	무신고 20%(과소신고 10%, 부당과소·미신고 40%) + 연체이율 (하루 0.03%) (예정신고 포함)	각 양도소득을 1년간 합산함.
	근로소득 연말정산	1.1~12.31	매년 12.31 (연말정산은 차년 3월 10일)	매월 10일	2월 말일 (원천징수일)	미달세액의 3% +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하루당 0.03%) ≤ 미달세액 × 10%	소득지급시마다 납부함.
	이자·배당 등 분리소득	각 지급시점	각 지급시점	다음달 10일	각 지급시점	미달세액의 3% + (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하루당 0.03%) ≤ 미달세액 × 10%	각 소득을 1년간 합산함.
	납세조합 가입소득	1.1~12.31	발생월 다음달 말일	징수월 다음달 10일	발생월 다음달 말일	5%	각 소득을 1년간 합산함.
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	정관상 1년간 사업연도기간	사업연도 말일	말일 부터 3개월내 : 12월말 법인이면 3월 31일 (자기신고, 외부조정신고 관계없이 3개월임)	신고납부일 (말일 부터 3개월내의 자진신고일)	· 과소신고 : 미납세액 10% + 연체이자 (하루 0.03%) · 무신고 : 미납세액 20%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 연체이자 (하루 0.03%) · 부당과소·미신고 : 40%와 수입금액 0.14% 중 큰 금액 + 연체이자	각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마다 사업연도(1년) 기간이 다름(대부분 법인은 1.1~12.31임).

세법·세목	유형·소구분	과세기간	납세의무 성립일	신고납부 기한	납세의무 확정일	기한후의 가산세율	비고 및 특기사항
상속세	자연인의 사망(상속 재산+10년내 증여 재산)	사망시의 전 재산(일생동안의 누적재산)	상속개시일(사망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9개월(해외거주)내	정부부과 고지일	무신고 20%(과소신고 10%, 부당과소·미신고 40%)+연체이율(1일당 0.03%)	적법자진신고(6개월내)납부시 10% 세액공제 혜택
증여세	증여계약 후 실행된 재산	10년간 증여재산 합계액(10년전~증여시점)	증여재산취득일(증여실행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내	정부부과 고지일	*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 2%(0.02%) ▷1개월내 제출시 50% 감액	적법자진신고(3개월내)납부시 10% 세액공제 혜택
종합부동산세	토지·건물 등 일정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	1.1~12.31	매년 6월 1일	12. 15	정부부과 고지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 1~6.30 7.1~12.31	6. 30, 12. 31	종료후 25일	신고납부일		매입이 많거나 수출거래이면 환급되기도 함.
	예정신고 납부	1. 1~3. 31 7. 1~9. 30	3. 31, 9. 30	종료후 25일	신고납부일		
지방세	재산취득 행위	부동산 등 취득시마다	취득일	취득일부 터 60일	신고납부· 고지일	20%+미납부연체이자(1일당 0.03%)	자진신고불이행시 보통징수고지
	등기·등록 행위	관서·관청 등록시마다	등기·등록 신청일	신청일납부(60일내 등기의무)가 있고 등기후 30일내 납부함.	신청일	20%+미납부연체이자(1일당 0.03%) 60일 지난 지연 등기 과태료(등록세의 5배까지)(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법령상 등록의무없는 경우는 계속 안낼 수 있음.
	대부분의 지방세	1년 혹은 일정기간 단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일에서 1개월내 고지, 1개월내 납부가 일반적임.	고지일	10%~20%+미납부연체이자(1일당 0.03%)	지방자치단체 부과지방방법이므로, 가산세는 없고 가산금 규정 있음.



3. 거래대가와 소득지급의 과세증빙자료 작성 흐름표

(구입·지출자)

(판매·수급자)

공급받는 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	공급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 (법인·개인)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기재금액에 대해 10% 매입세액 공제 가능) •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법인·개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외주비, 금융비 등 공급받는 거래대가를 지출하고 비용·원가로 회계 처리함. • 사업자-각 생활과 최종 소비를 위해 제반 재화·용역 구입함. 	세금계산서 작성교부(2장), 세금계산서 겸용 신고된 지로영수증 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능) 영수증 작성교부(2장) : 부가가치세 별도 구분표기 (금전등록기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가능) 세금계산서, 영수증 면제	일반사업자(법인·개인+전문면허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중·소규모개인사업자, 소매·음식·숙박·목욕·이용·운송업 등(법인·개인 등), 최종소매상, 구멍가게(비사업자에게 거래), 소비자공급거래사업자, 전문면허사업자의 비사업자공급) 택시, 노점, 행상, 소매상, 무인판매기, 전력·도시가스의 중간배부명여자, 수출 등의 외화획득, 개인적 공급, 자가공급 등
	<비사업자의 공급>	근로자, 노동자, 직장인, 월급쟁이, 종업원 일용근로자, 일당근로자(원천징수부반 미치) 사업적 인적행위, 전문용역 제공 자금제공(대여·출자) 일시적·우발적 재화 판매·양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재화·용역공급>	일반사업자(법인·개인) : 의사, 개인적 용역 소매업자,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 최종소비공급자 금융·보험·용역업자 전문자유직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의사 등)·문화·예술·체육, 고용되지 않은 실적별 수입자(자유계약자 등)로서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버스, 소매업자
	근로소득(및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교부(3장) 소득지급명세서, 영수증 작성의무 면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교부(3장)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3장)(이자·배당표시) 계약서와 개인 영수증	근로자, 노동자, 직장인, 월급쟁이, 종업원 일용근로자, 일당근로자(원천징수부반 미치) 사업적 인적행위, 전문용역 제공 자금제공(대여·출자) 일시적·우발적 재화 판매·양도
	계산서 작성교부(2장), 계산서 겸용 신고된 지로영수증 가능 일반영수증·금전등록기 영수증, 일반적 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자계산서, 보험료계산서, 영수증 등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교부(3장)	일반사업자(법인·개인) : 의사, 개인적 용역 소매업자,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 최종소비공급자 금융·보험·용역업자 전문자유직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의사 등)·문화·예술·체육, 고용되지 않은 실적별 수입자(자유계약자 등)로서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버스, 소매업자
	계약서와 개인 영수증 <외국인, 외국법인 등의 국내비거주자>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작성교부(2장) 공급대가청구서, 영수증, 계산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작성교부(3장)	일반사업자(법인·개인) : 의사, 개인적 용역 소매업자, 금전등록기 설치사업자, 최종소비공급자 금융·보험·용역업자 전문자유직업소득자 중 면세사업자(의사 등)·문화·예술·체육, 고용되지 않은 실적별 수입자(자유계약자 등)로서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 버스, 소매업자
	<외국인, 외국법인 등의 국내비거주자>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 작성교부(2장) 공급대가청구서, 영수증, 계산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작성교부(3장)	세관경유,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세관장) 세관경유 부가가치세 면세물품 국내 원천소득지급(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제반소득)

※ 사업자의 모든 지출·비용·원가거래에 대한 증빙요건 강화 : 건당 3만원 초과 각종 지출에 투명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있어야 적법), 없으면 없는 거래금액의 2% 가산세 적용 :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되는 접대비에 투명적격증빙 없으면 손금불산입하고 비용부인하여 세금 추가납부(거래처 경조사비는 증빙없이 20만원까지 비용인정 가능)

※ 2011년부터 법인사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1) 각종 비용의 증빙지출서류와 손금산입 여부

항목 및 내역	2007년	2008년	2009년 이후
접대거래의 지출증빙 불비시 손금부인	5만원 초과거래시 지출증빙 없으면 손금불산입	3만원 초과거래시 지출증빙 없으면 손금불산입	1만원 초과거래시 지출증빙 없으면 손금불산입
법정지출증빙 없어도 손금인정되는 접대비 금액 한도	5만원 이하 접대거래	3만원 이하 접대거래	1만원 이하 접대거래
개인카드로 접대비 지출시 인정 여부	개인카드 안되고, 법인개별카드만 비용인정(5만원 이하 금액은 개인카드도 비용인정)	개인카드 안되고, 법인개별카드만 비용인정(3만원 이하 금액은 개인카드도 비용인정)	개인카드 안되고, 법인개별카드만 비용인정(1만원 이하 금액은 개인카드도 비용인정)
일반 지출거래의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5만원 초과거래시 법정증빙 없으면 거래액×2%의 가산세	3만원 초과거래시 법정증빙 없으면 거래액×2%의 가산세	3만원 초과거래시 법정증빙 없으면 거래액×2%의 가산세
개인카드로 일반비용 사용시 손금문제	개인카드 가능	개인카드 가능	개인카드 가능
거래처 경조사비	10만원까지 비용인정	10만원까지 비용인정	20만원까지 비용인정

(2) 사업자간에 주고 받는 세금계산서나 투명한거래증빙 주고받기 정착화 관련 중전과 달라지는 사항 및 주의점

- 거의 모든 구입·매입·지출거래에서 지출증빙(매입세금계산서 등,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입수하고 매입세액공제 적용받아야 함 : 과세특례자 폐지되고 직전 1년 총매출 4,800만원 미만 자에 한하여 간이과세자로 되므로 기업들과 거래하는 대부분 사업자는 적법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 일반사업자로 격상되었음.
- 관련증빙을 입수하는 매입자입장에서도 2002년 귀속소득부터는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고 정규 지출증빙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인정하는 기준경비율제도로 변경되었으므로 적법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소득지급원천징수영수증)입수는 필수적임.
- 1년간 총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극히 영세한 구명



가게(예를 들어 주인과 종업원 합해 2인 이하 등)만 해당됨. 총매출액 4,800만원이라면 이익이나 소득은 많아야 2,400만원(50%) 이하일 것이므로 가게주인 1인 이상의 연봉정도도 안됨.

-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반사업자로 분류되어 거래대가나 보수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꼭 발행해 주어야 하는 사업(영수증은 안됨)(부가령 제74조제2항)

① 제조업, 광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특별시·광역시)

② 대부분의 전문면허증사업 : 법무사, 변호사, 변리사, 심판변론인,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측량사, 도선사(단 행정사는 예외)

- 의제매입세액을 공제(2%, 음식점은 8%(법인은 6%))받기 위한 필수서류(면세농산물 구입한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 등), 과세유흥장소 음식점업 경영자 및 중소기업은 4%임.

①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③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등

-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율(5%, 10%, 20%, 30% 등)을 납부세액에서 빼줌(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7월 1일 시행 : 국가·지자체·공기관·협회 등은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업무실적보고자료 등을 매분기마다 관할세무서로 통보함.

-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단계적 시행(법 §16② 및 법 §22 ②)

-2011년부터 법인과 일정규모 이상(연매출 10억)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나,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2. 1. 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한 경우 가산세 적용

① 발급일 익월 16일~과세기간 말 익월 11일까지 전송한 경우 :

0.5%

- ② 발급일의 과세기간 말 익월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 1%
다만,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적용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법 인	①	미적용	0.1%	0.1%	0.1%	0.5%
	②	미적용	0.3%	0.3%	0.3%	1%
개 인	①	-	미적용	0.1%	0.1%	0.1%
	②	-	미적용	0.3%	0.3%	0.3%

(3) 『경비지출증빙제도』 관련 안내

<정규영수증 수취 · 보관 의무화 제정취지>

기업의 경비지출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일부 수입금액이 양성화되지 않는 업종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촉진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정규영수증 수취 · 보관 의무 내용>

- 법인 및 복식부기 의무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3만원 초과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국세청승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미수취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함.
- 정규영수증 수취 ·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① 수익사업(사업소득에 한함)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보험업법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사업자 및 농민으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법·영 제 15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 ②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면세인적용역)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의료보건용역, 작곡가 등 일정한 직업의 인적용역(법·영 제158조제2항제3호) +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없이 독립적 성과급 지급받는 용역 : 원천징수율은 3.3%
 - ③ 사업의 양도, 방송용역, 국외에서 제공받은 재화·용역,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 토지·주택구입, 주택임대용역(법인임대업자 제외), 택시운송용역, 건물(주택제외)구입(계약서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 금융보험용역, 전산발매통합시



스텝에 의한 입장권 등, 항공용역, 간주임대료 VAT 임차인 부담분, 대가지급지연 연체이자(「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④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임가공용역·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
 - 인터넷·PC·홈쇼핑·우편판매에 의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 접대비: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등) 수취해야 인정됨.

4. 기타의 중요세법

(1) 농어촌특별세법(목적세로 타세액×추가세율인 SURTax임)

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감면된 세액×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세액	감면세액×100분의 10
3	법인세법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금액을 포함한다)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2년간만 적용(98년까지)	5억 초과액×100분의 2 (2011년 1월 1일부터 삭제됨)
4	개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 동법 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나. 가목외의 경우	개별소비세×100분의 30 개별소비세×100분의 10
5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권의 양도가액	주식양도가×1만분의 15
6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취득세×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레저세×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종합부동산세×100분의 20

(2) 교육세법(목적세로 타세액×추가세율인 SURTax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금융·보험업자 ○ 1기분→5월 31일까지 ○ 2기분→8월 31일까지 ○ 3기분→11월 30일까지 ○ 4기분→익년 2월 말일까지	수익금액(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수익금액은 비과세)	0.5%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액	30% (등유·중유 등의 경우에는 15%)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납세의무자	교통·에너지·환경세액	15%
주세 납세의무자	주세액	10% (주세의 세율이 70% 초과인 주류는 30% 세율 적용)

〈지방교육세로 법령 이전된 교육세〉		
취득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세율-0.2)	20%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등록세액	20%
레저세 납세의무자	레저세액	40%
균등분주민세 납세의무자	균등분 주민세액	10%(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25%)
재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액	20%
승용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자동차세액	30%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담배소비세액	50%

(3) 인지세율표

과세문서	기재금액	세액
1.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1,000만원 이하	비과세
	1,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20,000원
2. 금융·보험기관과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금융회사 아니면 과세예외)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40,000원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70,000원
3. 도급에 관한 증서(개인간 작성은 제외)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
4. 광업권·무체재산권 등 양도증서		
○ 소유권에 관한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증서		3,000원



○ 시설물이용권증서(골프회원권, 휴양콘도회원권에 관한 증서)	2만원~35만원	
○ 계속적·반복적 거래증서(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 : 300원)	1,000원	
○ 상품권 및 선불카드	1만원 이하	비과세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200원
	5만원 초과	400원
○ 수익증권·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400원	
○ 예금·적금증서 또는 통장, 환매매매조건부채권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시설대여계약서	10,000원	
○ 채무증서		
① 사채증서 등	10,000원	
②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서 등	1,000원	
③ 보증보험증권,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채무보증서 등	200원	

비과세문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기금은 제외)
	○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관한 증서
	○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유가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것
	○ 우편전용 물건에 관한 증서
	○ 통화안정증권
	○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관련 증서
	소장철용 인지액 산출방법 소가금 1천만원 미만일 경우=소가금×5/1,000=인지액

(4) 증권거래세법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신고·납부	가산세	기 타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주권의 양도 ○ 합병·합자·유한회사 사원 지분의 양도 ○ 주권발행전의 주식, 주식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 특별법상 법인의 출자증권의 양도 ○ 채무인수한 거래소가 주권 등 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권 등의 대체결제 예탁결제원 ○ 금융투자업자 ○ 양도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금융투자업자의 양도 시는 양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결제시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양도되는 주권양도가액 ○ 주권 등의 양도가액 알 수 있는 경우: 주권 등의 양도가액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경우는 시가액) ○ 주권 등의 양도가액 알 수 없는 경우: 영 §4에 의한 양도가액 법정평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세율: 0.5% ○ 탄력세율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3% ○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15% + 농특세 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일 다음 달 10일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납세의무자가 휴업·폐업·기타 조세포탈 우려 있는 때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경우 총괄신고납부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② ○ ① 증권거래세의 신고불성실가산세 ○ 미신고세액 ×10% ○ ② 세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일수 ×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관계장부를 비치·기장하여 당해 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 ○ 증권예탁원, 증권회사는 거래정수의무부담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의 양도(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제외)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 증권회사가 증권저축가입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기업의 주권을 합리화 기준에 따라 양도시 						